



교육감 규정

번호: A-780

제목: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항목: 학생

발행: 2019년 4월 18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6월 29일자 교육감 규정 A-780을 갱신하고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에 따라 수정된 2001년 매키니 벤토 홈리스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의 현재 조항에 부합하고 홈리스 아동이 연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영구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받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수정된 (“ESSA”)2001년 매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McKinney-Vento”)의 새로운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 홈리스 아동의 정의가 위탁 보호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을 제외하고 비상 또는 과도 보호소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서 사는 아동 및 병원에 버려진 아동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섹션 I.A).
- 독립 청소년의 정의가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담당할 어른이 없는 더부살이 상황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섹션 I.C).
- 학부모의 정의가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아동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섹션 .C., 주석 2);
- “학생”의 정의가 preschool 학생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섹션 I.B).
- “원래 학교”의 정의가 preschool 및 학생이 홈리스 상태에서 원래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친 경우 원래 학교로부터 다음 학년도에 학생을 받게 될 지정된 학교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섹션 I.D).
- 가족 지원관(Family Assistant)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섹션 I.F).
-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STH) 연락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명칭이 “교내 기반 STH 연락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섹션 I.G).
- 지역 STH 매니저의 정의를 추가하고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섹션 I.H. 및 IV.B.2 및 3).

- 교직원이 반드시 홈리스 학생 및 가정에게 학부모를 위한 매키니-벤토법 안내서를 제공하고 온라인 및 학교에서 어떻게 안내서를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섹션 II.C).
- 주거 환경 설문 조사의 주거 관련 질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학부모 또는 청소년이 어디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섹션 II.E).
-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는 특수교육 평가를 의뢰 받은 아동의 가족에게 주거 환경 설문 조사를 제공하거나 제 3 업체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하며 가정에서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섹션 II.F).
-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은 반드시 공립 유아원 교육을 포함해 다른 아동 및 청소년과 동일한 무료 교육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류 학교 환경에서 분리되지 않고 홈리스 상황 중 언제든지 지원 또는 등록 기간을 놓치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섹션 III).
- 홈리스 학생은 영구 주거지 학생들과 동일한 입학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홈리스 학생이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 및 기록이 없더라도 학생은 반드시 즉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섹션 III.A.1.a (i)).
- 홈리스 학생은 원래 학교에 남아있거나 새로운 주거지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 입학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섹션 III.A.1.a (ii)).
- 아동의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홈리스 학생을 원래 학교에 계속 두는 것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섹션 III.A.1.a (ii)).
- 홈리스 학생은 원래 학교에 남아있고 존스쿨로 진학하거나, 또는 존스쿨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이 비록 뉴욕시 밖으로 이사하여 계속 임시 거주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학교가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적절한 학교로 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섹션 III.A.1.a (ii)).
-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요건을 설명합니다(섹션 III.A.1.a (iii)).
- 교육청이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 및 정식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의 제기 계류 중 학생은 반드시 정원이 남아있고 학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등록되어야 하며 통학 교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섹션 III.A.1.a (iv), (v) 및 (vi)).
- 지정된 학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요구되는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해도 정원이 남아있고 학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즉시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등록시켜야 합니다.(섹션 III.A.1.a (vi)).

- 75 학군에 있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을 현재 위치의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섹션 III.B).
-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홈리스 학생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면 가족이 뉴욕시에 살고있는 한 최종 학년까지 재학할 수 있는 권리. 홈리스 학생이 뉴욕시 밖에 영구 거주하게 되면 학생은 영구 거주하게 된 해의 남은 학년도 및 학교의 최종 학년인 경우 추가 1 년을 같은 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 학생은 영구 거주 또래들과 함께 홈리스 상태에서 원래 학교에 남아 다음 학년 밴드로 진학하거나 학생이 뉴욕시 밖 임시 거주지 상태로 이사하더라도 홈리스 상태이면 다른 DOE 학교로 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섹션 III.A.2(g) & (h)).
-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관련 학업 또는 기타 기록을 구하는 등 학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등록 지원을 설명합니다(섹션 III.B.2);
- 홈리스 아동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이 없더라도 유아원에 재학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홈리스 아동을 받기 위해 학군 pre-K 프로그램에 학급 규모 변동이 가능함을 설명합니다(섹션 III.C.);
- 홈리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존스쿨이 없거나 존스쿨에 정원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학생은 지정된 과밀 대체 학교 또는 근처 다른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섹션 III.A.1.a (iv)).
- 분쟁해결 및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절차에서 STH 지역 매니저 또는 교내 STH 연락 담당의 역할을 설명합니다(섹션 IV.A & B).
- 홈리스 학생도 학업 및 과외 활동과 대학 진학 상담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구 거주 학생이 받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교육적 활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섹션 V.A);
- 가정 폭력 보호소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홈리스 학생의 개인 사생활 권리를 설명합니다(섹션 V.B).
- 유아원에서 12 학년의 모든 홈리스 학생은 홈리스 생활 중, 영구 거주가 된 학년도의 나머지 및 학교에서 최종 학년인 경우 추가 1 년동안 무료 통학 교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섹션 VII).
- 학생 교통 담당실("OPT")은 유치원-6 학년의 보호소 거주 홈리스 학생에게 스쿨버스 또는 대중교통이 아닌 유사한 대안 교통편을 마련하거나 제공하며 보호소의 홈리스 학생의 부모가 옐로 버스 서비스를 거부하면 학생 및 해당되는 경우 학부모는 메트로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섹션 VII.A).
- 보호소에 거주하지 않고 유치원-6 학년 또는 유아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의 경우 요청하면 교내 STH 연락관 또는 STH 지역 매니저가 OPT 와 함께 옐로 버스 루트가 제공되는지(교통편 제공이 가능한 적절한 루트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대안 교통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섹션 VII.B).

- 유아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 또한 교통편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옐로 버스 통학(교통편 제공이 가능한 적절한 루트가 있다면) 또는 MTA 규정상의 지하철 및 로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장 요건을 충족하면 메트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도 메트로카드를 받습니다(섹션 VII.E).
- 학교 통학을 위해 메트로 카드를 받았거나 무료로 대중 교통일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6 학년에 재학중인 홈리스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 통학에 자녀와 동반하기 위해 메트로카드를 받습니다(섹션 VII.F).
- 홈리스 가정이 영구 거주지로 이사하면 가정 지원관 또는 교내 STH 연락관이 학부모에게 자녀가 뉴욕시에 영구 거주하게 된 경우 현재 학교에서 최종 학년까지, 뉴욕시 밖에 영구 거주하게 된 경우 현재 학교에 남은 학년도 또는 학교의 최종 학년인 경우 추가 1 년을 재학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섹션 VIII).
- 홈리스 학생이 영구 거주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되는 경우 학년도가 끝날 때 까지 또는 학교의 최종 학년일 경우 추가 1 년동안 통학 교통편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섹션 VIII).
- 학부모의 본 규정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갱신했습니다(섹션 IX).



교육감 규정

번호: A-780

제목: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항목: 학생

발행: 2019년 4월 18일

요약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 따라 수정된 2001년 매키니-벤토 홀리스 지원법("매키니 벤토법")은 홀리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뉴욕시 교육청("DOE")은 뉴욕시 학군에서 교육과 관련된 매키니-벤토법 규정을 실행 및 주관할 책임을 갖고 있는 지역 교육 기관("LEA")입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절대로 보편적인 학교 환경에서 격리 또는 거주지에 따라 낙인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DO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학교 급식 및 수업 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포함)은 영구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홀리스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정의

A. **홀리스¹ 아동**이란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고정되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잠자리를 포함한 주거지가 부족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포함됩니다:

1. 집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유사한 이유로 타인과 함께 거주("더부살이"이라 칭함)하거나 적절한 거주 대안 없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나 캠핑장에 거주하는 경우
2. 공적으로 보조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종교 관련 쉼터,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환 거주 시설 포함)를 포함하는 비상 또는 전환적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
3. 병원에 버려진 경우
4. 일반적으로 정규 숙박 시설로써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설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¹ 본 규정서에서 "홀리스"의 정의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수정된 매키니-벤토법의 실행을 목적으로만 하며 이러한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추가적인 어떤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5.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빌딩, 표준 이하의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 역이나 비슷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 B. **어린이 및 학생**- “어린이”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는 뉴욕주 주민의 어린이로서 무료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학생은 장애 학생을 포함해 3-21 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유아원 학생 및 유치원-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합니다. 아동에는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이 독립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 C. **독립 청소년**은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담당할 어른이 없는 더부살이 상황의 청소년을 포함한 상기 정의된 홈리스의 정의에 부합하며 부모²의 물리적 양육권 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D. **원래 학교**는 아동이 영구 거주 상태에서 재학했거나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를 의미하며 학생이 홈리스 상태에서 원래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친 경우 원래 학교로부터 다음 학년도에 학생을 받게 될 지정된 학교를 포함합니다.
- E. 현재 위치의 학교란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소지의 존 학교 또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어린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 F. **가족 지원관**은 홈리스 학생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소 및 학교와 협력하도록 배정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가족 지원관은 학생들의 학교 등록 또는 전학, 통학 교통편 지원 확보 및 매키니-벤토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 G. **교내 거주지 생활 학생(“STH”) 연락관**은 임시 주거지 거주 학생(Student in Temporary Housing: “STH”) 연락 담당은 서비스가 ESSA 에 따라 수정된 매키니-벤토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학교 건물 내 담당자입니다.
- H. **지역 STH 매니저**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ESSA 에 따라 수정된 매키니-벤토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홈리스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I. 홈리스 학생 분류

- A. 학교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형태로 홈리스 아동의 교육 권리에 대한 포스터를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교내 STH 연락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추가 포스터가 필요하면 학교는 교내 STH 담당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² 본 규정에서 말하는 “부모(parent)”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 관계의 기타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부모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부모 및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person in parental relation)”이란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 B. 교직원이 어떤 학생이 지원이 필요한 홈리스이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내 STH 담당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C. 학교 교직원이 어떤 학생이 홈리스임을 알게 되면 교직원은 학생 또는 가족에게 홈리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설명한 정보 안내서인 학부모를 위한 매키니-벤토법 안내서(본 규정서 첨부 1)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최소한 교내 STH 연락관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사무실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pecial-situations/students-in-temporary-housing>.
- D. 가족 지원관은 또한 홈리스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학부모에게 학부모를 위한 매키니-벤토법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E. 주거 환경 설문: 학교는 반드시 주거 환경 설문(본 규정서 첨부 2)을 모든 새로 등록한 학생 및 학년도 중 주소를 변경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가정에서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홈리스 상태에 대한 정보를 ATS의 학생 정보 페이지(BIOU)에 입력하고 적절하게 관련 페이지의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 설문은 학교에서 교내 STH 연락관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사무실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pecial-situations/students-in-temporary-housing>.
- F.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CPSE)는 특수교육 평가를 의뢰 받은 아동의 가정에 주거 환경 설문을 제공하거나 제 3 자가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이 반드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III. **학교 등록**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은 반드시 공립 유아원 교육을 포함해 뉴욕시 학군의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이 받는 무료 교육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류 학교 환경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은 홈리스 상태 중 지원 또는 등록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A. 학교 선택

1. 뉴욕시 학교 학군이 지정된 학교 학군인 홈리스 학생은 다음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원래 학교 또는 현재 주소지의 학교³.

- i. 홈리스 학생은 뉴욕시 학군 내 영구 주거지에서 사는 학생들과 동일한 입학 절차를 따르며 예외적으로 홈리스 학생이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 및 기록이 없더라도 학생은 반드시 즉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ii. 홈리스 아동은 원래 학교에 남아있거나 임시 주거지 위치에 따라 재학 자격을 가지고 입학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 학생이 전학하거나 원래 학교에 남아있는 등 아동이 어떤 학교에 재학할 것인지를 선택은 해당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홈리스 학생을 원래 학교에 계속 두는 것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이 원래 학교에 남아있다면 학생은 존 스쿨 또는 존 스쿨이 없을 경우 적절한 학교로 연계되어 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 iii. 학생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DOE 는 반드시 학부모 또는 청소년(독립 청소년의 경우)가 지정한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재학할 학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음에 따라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 홈리스 학생을 원래 학교에 계속 두는 것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취, 교육,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이동성 영향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중심의 요소를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형제자매의 학교 배정은 물론 아동 또는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독립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요청을 우선합니다.
- iv. 만약 최선의 이익 결정을 실시하고 학생 중심의 요소를 고려한 후 DOE 가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요청한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³ 본 규정서의 섹션 I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학교란 아동이 유아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영구적인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을 때 등록했던 학교 또는 아동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를 의미합니다. 현재 위치의 학교란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소지의 존 학교 또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어린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DOE 는 반드시 학생의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에게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및 형태로 이러한 결정의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면 설명은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신속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섹션 IV 을 참고하십시오.)

- v. 최선의 이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계류 중에는 정원이 있고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 또는 청소년은 반드시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 vi. 지정된 학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요구되는 기록(예방 접종 기록, 거주지 증명,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홈리스 기간 중 지원 또는 등록 마감일이 지나거나 미수 요금이 있다 해도 정원이 남아있고 학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즉시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을 즉시 등록시켜야 합니다.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은 필요한 서류를 구하는 동안 반드시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받는 학교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관련 학업 또는 기타 기록을 구해야 합니다.

- b. 장애 학생이 75 학군 소속이거나 추천 받고 학부모가 현재 위치의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그 학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결정합니다. 만약 특수교육 초기 평가, 연례 검토 또는 재검토가 진행되는 중에 홈리스 생이 전학을 한다면 평가 및 검토를 현재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서 마치게 됩니다.

2. 홈리스 학생들의 권리

- a. 영구 주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교에서 홈리스 학생의 입학에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홈리스 학생은 일반적으로 등록에 요구되는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해도 정원이 남아있고 학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 학교 학군의 학교에 즉시 등록하고 재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홈리스가 된 학생은 교육청 규정 A-101 의 요건에 따라 학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정원이 남아있는 다른 공립 학교로 전학하여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 b. 홈리스 고등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및 등록하기 전에 통학 또는 기타 문제점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⁴
- c.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닐지 또는 전학에 대한 선택은 학생이 각기 다른 임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때 마다 주어집니다.

⁴ 통학의 어려움에 따른 전학은 고등학교 레벨에만 적용됩니다.

- d. 홈리스 아동의 정기적인 출석은 매우 중요하며 DOE 는 반드시 학생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자주 결석한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가정 지원관 및/또는 STH 연락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대안적인 학교 수업을 제공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 e. 현재 거주지의 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원래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요건이 맞는 경우 통학 교통편(섹션 VII 에 논의)은 반드시 가정 지원관, 교내 STH 연락관 또는 교내 교통 연락이 마련해야 합니다.
- f. 교육감 규정 A-101 의 조항에 따라 홈리스 학생은 일단 학교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DOE 학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이 뉴욕시 밖에서 영구 거주하게 되면 학생은 영구 거주하게 된 학년도가 끝날 때 까지 또는 학교의 최종 학년일 경우 추가 1 년동안 같은 학교에 계속 재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 g. ESSA 및 교육감 규정 A-101 에 따라 홈리스 학생은 원래 학교에 계속 재학하고 영구 거주 또래와 함께 다음 학년 밴드로 올라가며 홈리스 상태에서 뉴욕시 밖의 임시 거주지로 이사하더라도 다른 DOE 학교로 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B. 등록 지원

1. 가족 지원관,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및 교내 STH 연락관은 교육감 규정 A-101에 규정되고 학생 등록 담당실이 실시하는 절차에 따라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을 포함한 홈리스 학생들은 학교 등록 또는 전학의 목적으로 패밀리 웰컴 센터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을 등록할 때 지정된 학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거주지 증명, 성적 증명서/학교 기록, 예방 접종 또는 기타 보건 기록, 출생 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을 **즉시 등록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는 학교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한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관련 학업 또는 기타 기록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예방 접종 또는 기타 보건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 교내 STH 연락관과 논의하여 학부모에게 약속 없이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로 소개합니다. 만약 마지막 재학한 학교로부터 출생 증명서나 기타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 가정 지원관, 교내 STH 연락관 및 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이러한 서류를 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C. 유아원

홈리스 아동은 서비스가 학군의 영구 거주 아동에게 제공되고 정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예방 접종 기록, 거주 증명, 출생 증명서 등)가 없더라도 유아원 수업에 즉시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pre-K 학급 정원이 다 찬 상태에서도 홈리스 아동을 받기 위해 학급 규모 변동이 가능합니다.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유아원 학생들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섹션 VII 참조)

IV. 분쟁해결 및 이의제기 절차

A. 분쟁해결 논의 절차

홈리스 학생 또는 독립 청소년이 원래 학교에 남아있거나 새 학교로 전학 여부, 학생의 홈리스 상태 또는 학생의 통학 교통 자격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뉴욕주 교육부("SED")에 정식 이의제기 필요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학교 선택, 홈리스로서의 자격 또는 통학 교통에 대한 분쟁의 경우 DOE는 반드시 분쟁의 완전한 해결이 계류중인 동안 학생이 자격 요건을 부합하고 정원이 남은 경우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본인이 지정한 학교에 학생을 등록하고 통학 교통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속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학생은 교내 STH 연락관 또는 가정 지원관과 협의하여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에게 의뢰되며 담당자는 상황을 조사하고 학교 배정에 대해 학교 등록 담당실과, 교통편에 대해 학생 교통 담당실(OPT)와 논의할 것입니다.

3.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은 최종 서면 결정 및 이의 제기 권리 통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B. 이의제기 절차 및 임시 학교 배정

1. 학부모/청소년이 위에 설명된 대로 학교 배정, 홈리스 자격 또는 교통에 대해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이 발급한 최종 결정에 이의제기를 원하면 학생은 즉시 자격 요건을 부합하고 정원이 남은 경우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원한 학교에 배정되며 제공되거나 요청된 경우 학생 또는 청소년이 SED 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가 계류중인 동안 교통편은 반드시 30 일간 제공되어야 합니다.
2.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 또는 교내 STH 연락관은 학부모/학생이 이의 제기 양식(“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작성한 진정서 및 기타 증명 자료를 진정서 서비스 5 일 내에 SED 에 접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이 발급한 최종 결정 30 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학생은 이의 제기 계류 중 학부모 또는 독립 청소년이 지정한 학교에 남아있거나 등록하며 교통편은 계속 지원됩니다. 모든 가능한 이의 제기가 종료되고 학부모 또는 청소년의 원래 학교 선택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부모 또는 청소년은 다른 학교 또는 학군에 재학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이 발급한 최종 결정 30 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면 DOE 배정 결정이 이행됩니다.
3.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 또는 교내 STH 연락관은:
 - a. 학부모에게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이 발급한 최종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진정서 양식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ounsel.nysed.gov/common/counsel/files/homelessform-revised2016.pdf> 영어 이외의 언어 번역본:
<http://www.counsel.nysed.gov/appeals/homelessForms>;
 - b. 학부모/학생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c. 필요한 진정서 및 기타 증빙 서류의 사본을 마련합니다.
 - d. SED 에 진정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접수합니다.

STH 지역 매니저(또는 승계 직책) 또는 교내 STH 연락관은 DOE 를 위해 진정서 및 기타 증빙 서류의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거론된 응답자의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학부모 또는 청소년(독립 청소년의 경우)에게 서비스 확인 및 STH 지역 매니저 또는 교내 STH 연락관이 진정서 및 증빙 서류를 받았고 SED 에 서류 접수 예정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V. 홈리스 학생 및 청소년의 권리 및 동등한 서비스

장애 학생을 포함한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은 반드시 공립 유아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학교 수업 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아동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적 서비스를 포함해 학교에서 영구 거주 학생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만약 특정 프로그램의 정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 찬 경우 홈리스 학생을 위한 예외는 없으며 상기 설명된(섹션 III.C) 바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정원이 찬 pre-K 학급에 홈리스 아동을 포함하기 위해 학급 규모 변동을 받는 공립 유아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이런 학생들도 영구 거주 또래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입니다. 요청한 프로그램 또는 학교이 다 찬 경우 홈리스 학생은 과밀 대체 학교(overflow school) 또는 인근의 다른 학교에 등록될 것입니다.

A. 학업 및 과외 활동 및 대학 진학 상담 액세스

1. 홈리스 학생은 반드시 이전 학교 재학 중 완료한 수업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학점을 적절히 받아야 합니다.
2. 홈리스 학생은 해당 범주에 부합하는 경우 매그넷 스쿨, 써머 스쿨, 직업 및 기술 교육 및 AP 수업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업 및 특별 활동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3. 홈리스 학생은 미납 요금, 벌금 또는 결석으로 인해 학교 또는 프로그램 등록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4. 학교 카운슬러 및 교직원들은 반드시 홈리스 학생에게 대학 선택, 지원 절차, 재정 지원, 캠퍼스 내 지원을 포함한 대학 진학 준비 향상을 위한 도구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홈리스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

1. 홈리스 학생의 생활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학생 교육 기록이며 가정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따라 보호됩니다. DOE는 학부모의 동의(독립 청소년의 경우 본인) 없이 FERPA 적용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임시 거주 주소 또는 임시 거주 상태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가정 폭력 보호소(Domestic Violence Shelter)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소 주소는 반드시 알려져서는 안되며 이 주소를 ATS 입력해서는 안된다.

VI.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 수혜 자격

임시 거주지 생활 학생들은 무료 학교 급식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VII. 교통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유아원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은 홈리스 상태 중, 영구 거주가 된 학년도의 나머지 및 학교에서 최종 학년인 경우 초기 1년동안 무료 통학 교통편 수혜 연령 및 거리 요건에서 제외되며 무료 교통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A. 학생 교통 담당실("OPT")은 유치원-6 학년의 보호소 거주 홈리스 학생에게 스쿨버스 또는 대중교통이 아닌 유사한 대안 교통편을 마련하거나 제공합니다. 보호소의 홈리스 학생의 부모가 옐로 버스 서비스를 거부하면 학생 및 해당되는 경우 학부모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메트로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B. 보호소에 거주하지 않고(주거지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다른 이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유치원-6 학년 또는 유아원에 재학 중인 홈리스 학생의 경우 요청하면 교내 STH 연락관 또는 STH 지역 매니저가 OPT 와 함께 옐로 버스 루트가 제공되는지(교통편 제공이 가능한 적절한 루트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대안 교통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 C. 만약 노숙 학생을 위한 스쿨 버스가 마련되거나 제공되지 않았다면 교직원이 가정 지원관, 교내 STH 연락관 및/또는 지역 STH 매니저와 상의할 것입니다.
- D. 옐로 버스를 제공받지 않는 STH 학생은 연령 또는 임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와 관계 없이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 유아원 학생 또한 교통편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옐로 버스 통학(교통편 제공이 가능한 적절한 루트가 있다면) 또는 MTA 규정상의 지하철 및 로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장 요건을 갖추면 메트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도 메트로카드를 받습니다.
- F. 학교 통학을 위해 메트로 카드를 받았거나 무료로 대중 교통일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6 학년에 재학중인 홈리스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 통학에 자녀와 동반하기 위해 메트로카드를 받습니다.
- G. 만약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고 IEP 에서 특수한 교통편을 추천하였다면 학교는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OPT 에 연락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주소를 변경하고 동일한 학교에 계속 재학하려면 해당 학교는 이 학생의 새로운 거주지를 ATS 에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ATS 에 변경 내용이 입력되면 OPT 에서 5 일(업무일 기준) 내에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마련합니다. 교내 STH 연락관은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OPT 와 협력합니다. 새로운 뉴욕시 75 학군 프로그램으로 전학한 홈리스 학생의 경우 75 학군 배정 담당자가 배정 및/또는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VIII. 영구 주거지로 이사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 지원관 및/또는 교내 STH 연락관은 홈리스 서비스 담당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센터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만나 영구적인 거주지로 이사하는데 있어 이사가 원활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합니다. DHS 보호소가 아닌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가족이 영구적인 거주지로 이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STH 지역 매니저 또는 교내 STH 연락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뉴욕시에서 영구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현재 다니는 학교에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 뉴욕시 밖에서 영구 거주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자녀가 영구 거주하게 된 학년도가 끝날 때 까지 또는 학교의 최종 학년일 경우 추가 1년동안 같은 학교에 계속 재학할

권리를 가짐을 알려야 합니다. 통학 교통과 관련하여 홈리스 학생이 영구 거주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되는 경우 학년도가 끝날 때 까지 또는 학교의 최종 학년일 경우 추가 1년동안 통학 교통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감 규정 A-801에 규정된 홈리스가 아닌 학생과 동일한 통학 교통 자격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X.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Office of Community Schools

Students in Temporary Housing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3M

New York, NY 10007

전화: 718-828-2208

이메일: STHinfo@schools.nyc.gov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대상- 학부모 및 청소년 안내

주제	중요한 정보
매키니-벤토법에 따른 교육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를 노숙자로 간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전환 쉼터, 모텔, 캠프그라운드, 또는 병원에 유기된 경우 •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버스, 기차 또는 버려진 건물에서 생활하는 경우 • 주거지를 찾지 못했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물리적 양육권이 없으며, 상기 설명된 노숙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i>보호자가 없는 노숙 청소년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숙 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i>
매키니-벤토법의 노숙자 정의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 존스쿨에 정원이 남았을 경우,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 • 현재 주소지에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 원래 학교(노숙자가 되기 전에 다녔거나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새로운 존 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통학 교통수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의 상황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미비로 인해 학교 등록이 거부되지 않을 권리 • 노숙자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을 권리 • 무료 급식 수혜 자격
중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보로는 최소 한 명의 임시 주거지 거주 학생(STH) 담당 지역 매니저를 두고, STH 연락 담당 역할을 맡기고 노숙 학생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STH 지역 매니저는 가정 지원 팀을 감독합니다. 지역 매니저 연락처 정보는 여기¹에 있습니다 • 각 학교에는 STH 학교별 연락관을 두어 해당 학교에서 직접 STH 를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 일부 학교에는 STH 를 지원하는 STH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75 학군 및 79 학군에는 각 학생의 교육에 관련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SHT 담당자가 있습니다. • 가정 지원 담당은 쉼터 및 일부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이들 직원은 노숙 학부모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자녀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가정 지원 담당은 학교 등록, 예방접종, 학교 기록 및 통학 교통편 마련 등의 부분에서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노숙 학생에 대한 연수 또는 독립한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학교에 있는 연락 담당관이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또는 지역 매니저에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도록 합니다.
학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는 노숙 학부모 본인의 노숙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고자 할 때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학생이 영구적인 주거지에서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원래 학교); b)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 또는 c) 홈리스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내 영구 거주지 기거 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아무 학교나(입학자격이 충족되고, 정원이 남아 있다는 가정 하에).
학교 등록: (자녀가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전학을 원할 때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중학교 - 존스쿨이 있을 경우, 학년도 중 언제든 학교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존스쿨이 없을 경우, 또는 다른 학교들을 찾아보고 싶을 때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패밀리 웰컴 센터 위치는 311 로 문의 • 고등학교-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등록하여야 함 • 현재 NYC 홈리스 서비스국 쉼터에 거주할 경우, 필요에 따라 거주 중인 쉼터의 가정 지원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음. 쉼터에 가정 지원 담당이 없거나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STH 지역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등록관련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은 본래 학교에 남아 있거나 새로 배정된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귀 자녀는 분쟁의 해결 여부에 따라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에 임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는 이의제기 권리를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학교의 결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STH 가정 지원관이나 해당 학교의 STH 연락관, 또는 STH 지역 매니저를 소개시켜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통학 교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키니-벤토법에 따라 노숙자로 정의된 학생들은 필요하다면 통학 교통편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치원-6 학년 학생들에게 스쿨 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이들 학생은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통편과 학생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Pre-K-6 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부모 역시 자녀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 교통 지원 (메트로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7-12 학년 학생들은 학생용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로 STH 담당자에게, 또는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¹ [A-101 Attachment 5 - Affidavit of Emancipation-Posted 3-1-18.docx](#)

학부모/보호자/학생 여러분께:

본 양식은 매키니-벤토법 42 U.S.C. 11435 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각 학생 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차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주거 관련 질문들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임시 거주지 연락 담당 귀하: 본 양식을 작성하는 학생과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해당 학생은 주거지 증빙 및 등록 패키지의 일부인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 패키지에 본 양식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학군에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거주 상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학생 성명 및 정보:

성	이름	미들네임
OSIS 번호:	생년월일(월/일/년)	학교

학생의 현재 생활 환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체크 (√)	주거 설문 선택	(학교 작성란) ATS 코드
	더부살이(Doubled-Up) - 거주지를 잃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척 또는 타인과 함께 거주	D
	셸터 - 비상 또는 전환 셸터	S
	호텔/모텔 - 비상 또는 전환 셸터에 머물고 있지 <u>않으며</u> ,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	H
	기타 임시 거주 상태 - 트레일러 파크, 캠프그라운드,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버려진 빌딩, 거리 또는 기타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	T
	영구 거주지 - 일정하고 일반적이며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	P

학생이 영구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청소년 - 물리적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	(학교 작성란) 적용되는 경우 "Y" 입력
--	--	-------------------------

학부모/보호자 (인쇄체로)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이 양식을 자녀의 학교에 요청된 바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참고: 위에 제공하신 답변은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매키니-벤토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보호 받는 학생들은 주거지 증빙, 학교 기록, 예방접종 기록 또는 출생 증명 서류와 같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 해도 즉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등록한 후, 새로운 학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에 예방접종 기록 및 임시 거주지 생활 학생(STH)을 포함한 학생의 교육관련 기록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하여야 합니다.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STH) 담당은 반드시 학생이 기타 필요한 문서 또는 예방접종 기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매키니-벤토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학생들은 또한 무료 교통편 및 기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780 을 참조하십시오.

본 양식에는 1 페이지 분량의 첨부 문서가 있으며, 그 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학부모 & 청소년 대상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지침"